시립윤슬어린이집 개원 및 입소대기신청 안내

파주시 물향기마을 6단지(파주시 물향기1로 115) 내 시립윤슬어린이집 개원 및 입소대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입소대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어린이집 현황

어린이집명	소재지	모집인원	개원예정
시립윤슬어린이집	파주시 물향기1로 115	30명	2026. 12. 1.

※ 어린이집 개원(입소)일 및 모집 예정인원(반편성 인원)은 입소 희망 인원에 따라 변경(조정)될 수 있음

■ 모집 대상 및 인원

구분	출생년도	인원	학급	비고
0세	'25. 1. 1. 이후 출생	9	3	전체 정원 중 재원생 승급을 고려하여 반 구성
1세	'24. 1. 1. ~ '24. 12. 31.	10	2	
2세	'23. 1. 1. ~ '23. 12. 31.	11	2	
계		**30명**	**7**	

※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자 자녀 70% 입소 우선권 부여

■ 입소대기 일정

○ 신청기간: **2026. 11. 9.(월) 10:00 ~**

○ 신청방법

- 유보통합포털(enter.childinfo.go.kr) 입소대기시스템
-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www.childcare.go.kr) 입소대기시스템

○ 입소확정: **2026. 11. 16.(월) 이후 개별 통보**

○ 입소기준

- 「영유아보육법」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, 시행규칙[별표8의3]에 근거한 입소우선순위에 따름 ⇒ [첨부1] 입소 우선순위 참조

※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문의: ☎1566-3232 연결번호 1번

■ 유의사항

○ 입소대기 시스템 입력 시 **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자 자녀의 경우** 입소대기 아동 선택에서 "**무상임대 어린이집이 위치한 단지 내에 거주 중인 영유아**"에 **반드시 체크**

○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신청 시 산정된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

○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 미비 및 기간 내 미제출 시 입소 확정 취소될 수 있음

■ 문의처(시립윤슬어린이집) : ☎ 010-3165-2412

※ 입소확정일 첫날(11.16.)에는 관련 업무가 집중되어 전화 문의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, 당일에는 가급적 전화 문의를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첨부 1

입소 우선순위

순위	구 분
1순위 (항목당 100점)	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○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*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○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○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*의 영유아 *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*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(제3호), 순직자(제5호·제14호·제16호), 상이자(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·제17호)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*의 자녀 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○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*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.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(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) ○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○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○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○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○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나목2)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○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나목2)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
2순위 (항목당 50점)	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○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※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○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(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)인 아동의 형제·자매 ※ 입소일 기준으로 신청 아동의 형제·자매가 입소상태이어야 함. ※ 신학기(3월) 입소의 경우, 신청 아동의 형제·자매의 입소가 3월 신규 확정되어 입소를 전제로 할 경우 재원중으로 간주하여 가점적용 가능, 단,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
3순위	○ 1,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

첨부 2 **「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」 적용원칙**

○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(취업)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

- 취업의 기준 : 월 60시간 이상 근로
- 취업의 증명 :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(자영업자 포함)
-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
- 휴직자*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

 * 다만, 육아휴직자의 경우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9조제2항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.
-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

○ 취업준비자

- 직업교육훈련(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)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,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(서류상 확인)
- 단, 출석수업에 한함
-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. 다만,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 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(서류상 확인)

○ 자영업자

- 자영업자*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**이 가능해야 함

 *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 불가

 **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
-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
-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. 다만,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

○ 예술인

-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(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)

 ※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

○ 대학(원)생

-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 대학 등) 불인정

○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첨부 3

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

순위	구분		확인서류	제출구분
1순위	수급자		• 시스템 자동연계	
	한부모가족,조손가족		• 시스템 자동연계	
	차상위계층		• 시스템 자동연계	
	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		• 시스템 자동연계(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)	
	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		• 시스템 자동연계	
	다문화가족		•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) •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영주증 ※ 결혼이민자 중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: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(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※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)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중 1부 필수
	제1형 당뇨아동		• 진단서	필수
			• 의사소견서(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)	필수
	국가유공자 자녀		• 시스템 자동연계(수기 입력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&가족관계증명서)	필수
	다자녀가구		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•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: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	중 1부 필수
	임신부		• 진단서, 소견서,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, 임신확인서 (임신확인일, 출산예정일, 병원명, 병원직인,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)	중 1부 필수
	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		•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	필 수
	희귀·중증난치질환자		•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[별지 제38호서식] 장애인증명서 •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※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에 입소한 경우만 인정	중 택1 필수
	희귀·중증난치질환자인 형제자매		• 가족관계증명서와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[별지 제38호서식] 장애인증명서 • 가족관계증명서와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※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에 입소한 경우만 인정	중 택1 필수
	맞벌이가구	근로자	• 재직증명서 • 위촉계약서 • 근로계약서 •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	중 1부 필수
			•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(근로복지공단) •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 •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 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• 고용, 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• 소득금액증명원 •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	중 1부 필수

순위	구분			확인서류	제출구분
		대학(원)생		• 재학증명서 ※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 대학 등)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	필수
		취업준비자		•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·수료증 •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(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) •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•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※ 구직활동 증명서류:면접확인서, 입사지원서, 실습확인서,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·이수 및 학원수강증(출석 수업에 한함)	중 1부 필수
		예술인		• 예술인활동증명서 ※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	필수
		자영업자	공통	•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	필수
			일반	•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 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) • 소득신고 증빙서류 (세무서 접수증 등) • 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장 매출 장부(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) •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	중 1부 필수
			농·어업인	• 농(어)업인 확인서 • 농(어)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• 어선원부등본 • 기타 농·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	중 1부 필수
				• 매출계약서 • 판매증명서 •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	중 1부 필수
2순위	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, 또는 조손가족			• 가족관계증명서	필수
	입양된 영유아			• 입양확인서	필수
	가정위탁 보호아동			• 가정위탁보호확인서	필수
	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·자매			• 형제·자매 재원 확인 ※ 단, 재원아동 형제·자매의 경우,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	